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풍부한 관광·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생태 자원 등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고,
-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의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O 시티투어 운영(안 제3조)
 - 운영지원: 예산확보, 코스 개발, 전담가이드 배치 등
 - 운영시간: 09:30 ~ 18:00(운영시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운영코스 :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 변경 가능
- O 탑승료 징수(안 제4조)
 - ▶ 개인 성인: 5,000원 /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2,500원
 - ▶ 단체 성인: 4,000원 /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2,000원
- O 탑승료 면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6조)
- O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군산시 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u>공</u> 경 시 라이

2014년 8월 1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50호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군산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2. "이용자" 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탑승료" 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 5. "군인"이란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 6. "단체" 란 단체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 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30~18:00까지로 하며, 운행코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운영할 수 있다.
 -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 제4조(탑승료 징수)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2"와 같다.
 -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이용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③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 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 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시각은 4급)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 3. 그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산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 행 코 스

(제3조제2항 관련)

□ 3개코스: 은파-새만금, 근대문화, 고군산군도-새만금

O 은파-새만금 코스 : 수, 금

시외버스터미널(09:30)⇒군산역(10:00)⇒금강철새조망대⇒근대 역사박물관 일원⇒은파관광지(물빛다리)⇒새만금산업단지 홍보 전시관⇒풍력발전기⇒새만금방조제(야미-신시-가력)⇒비응항(새만금 수산시장)⇒군산역(17:20)⇒시외버스터미널(17:40)

O 근대문화 코스 : 토(11~3월), 일

시외버스터미널(09:30)⇒군산역(10:00)⇒임피역⇒발산리유적지 ⇒이영춘가옥⇒농특산물 홍보갤러리⇒근대역사박물관 일원⇒ 신흥동 일본식가옥⇒근대역사체험공간⇒동국사⇒수산물종합 센터(해망동)⇒채만식문학관⇒군산역(17:20)⇒시외버스터미널(17:40)

O 고군산군도-새만금 코스 : 토(4월~10월)

시외버스터미널(09:30)⇒군산역(10:00)⇒금강철새조망대⇒고군산 군도 선상 유람(선유도관광)⇒새만금방조제(야미-신시-가력)⇒군산역 (17:20)⇒시외버스터미널(17:40)

※ 코스 및 운행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별표 2]

탑 승 료

(제4조제1항 관련)

□ 시티투어 이용료

(단위 : 원)

л н	탑 선	를 다	비고
구 분	개 인	단 체	비고
성 인	5,000	4,000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2,500	2,000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3655호, 2012.3.13 전부 개정으로 건 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O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 O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변경하여 상 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 O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족교육팀, 가족돌봄팀, 가족상담 팀, 가족문화팀, 아이돌보미팀"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 종전의 "군산시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할 수 있다"는 위수 탁 공고시 신청자격를 개선하여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로 하여 투명성 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2호)

- O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 제3조에서 규정하는 ⇒ 제3조에 따른
 - 4인 ⇒ 4명
 - 범위 내 ⇒범위
 - 강구하여야 ⇒ 마련하여야
 - 기타 ⇒ 그 밖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군산시 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경소 때문이 이유를

2014년 8월 1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51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을 "군산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센터"를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군산시가 소유"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족교육팀, 가족돌봄팀, 가족상담팀, 가족문화팀, 아이돌보미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인이상으로 하되, 가족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를 "4명 이상으로 하되,"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을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필요한"을 "요구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민법」 제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1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반영으로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중 명절위문금품 삭제(제4조제5항)
 - "명절위문금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의견 수용
- O 명절위문금품 지원신청 절차 삭제(제7조제3항)

3. 참고내용

O 관계법령:「사회보장기본법」제3조 및 제26조 제2항

군산시 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1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52호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치"의 정의 등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투자진흥기금 지워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금을 지급 받는 업체에 대해 시내 업체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요청 할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정의에 "유치", "사업개시일" 등 용어 신설(안 제2조)
- O 위원회 구성 개정 (안 제4조)
 - 위원장 : 군산시장→군산시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호선)
 - 위 원: 11명이내→10인이상 15인 이내로
- O 신·증설 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지급 기준 개정 (안 제19조의3)
 - 증설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 제외
- O 우선 구매 등 신설 (안 제19조의7)
 -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시내업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우선 구매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O 지원 등의 결정 신설 (안 제34조의2)
 - 보조금 지급시 유치 노력하였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군산시 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볼 및 소* 때문이 함위한

2014년 8월 1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53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7. "유치"란 군산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 28.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에서"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증설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을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 기업"을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며,"로 한다.

제5장에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우선 구매 등) 시장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금을 지급받는 업체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등의 계약 및 구매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업체의 재화나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해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지원 등의 결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반영으로 용어수정 및 지원내용・신청절차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용어 수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 긴급복지 지원법에 소득인정액 개념이 없어 용어수정
 - : 소득인정액 ⇒ 소득
- 지원내용 중 명절위문금품 삭제(제3조제1항제5호)
- "명절위문금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볼 수 없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의견 수용
- 명절위문금품 지원신청 세부사항 삭제(제4조제2항)

3. 참고내용

O 관계법령:「사회보장기본법」제3조 및 제26조 제2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u>공</u> 경 시 교환이 하다.

2014년 8월 11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65호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인정액"을 각각 "소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원대상자는 조례제3조에 해당	
하는 자로 군산시 거주자 중 질	
병·사고·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	2
칙」제7조에 따른 <u>소득인정액</u>	<u>소득</u>
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	4
칙」제7조에 따른 <u>소득인정액</u>	<u>소득</u>
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고 재	
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다	
음 각목의 경우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했 혅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내용) ① -----에 대하여는 각호의 사항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 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 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지 아니 한다.

- 1. ~ 4. (생 략)
- 5. 명절 위문금품: 노인가구, <삭 제>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명절위문이 필요한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300천원, 개인 100천원 범위 내.

6. (생략)

제4조(지원의신청) ① (생 략)

② 조례제7조제3항에 의거 명절 <삭 제> 위문금・품 지원대상자에 대하 여는 읍・면・동장은 [별지제2 호서식]에 의하여 조사 후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개 정

1. ~ 4.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워의신청) ① (현행과 같 음)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O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신설 함으로써 투자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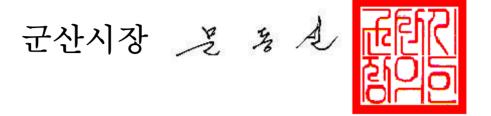
2. 주요내용

- O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 실시기관을 명시 (안 제7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적용
- O 신·증설 기업 지원의 신청 기간 및 신청서 신설 (안 제9조의4)
 -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 완료 후 1년 이내

3. 참고사항

- O 관계법령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3호(2014. 4.16)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11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66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8조의8"을 "제18조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3의 제목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을 "(국고지원

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신·증설 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의3 규정에의해 투자시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6호서식]

신·증설기업 지원 투자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의3관련)

ス	기 업 명			사업	자등록번호		
원	대표자 성명			법인	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 상	바이 보기 소케키				전 화		
0	법인 본사 소재지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	□ 매입		지 유 형	□ 개별입기	시 □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자지원			
이전	선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			-사 □연구스		,
	사업기간	본사 : 년 월(), 공장			연구소 :	년 월()
	전 또는 신·증설			1	또는 신·증식	열	
,	전(前) 소재지				·(後) 소재지	1 - 21-1	. 🗆 =11-1-01-0
	분양가(원/㎡)		원		화 신청 여부 기업구분	□ 대 [〕 중견 □ 중소
	사업 면적(m²)	부지 면적	공장용지	면적	건축연면	!적 기존	주공장면적률(%)
	또는 신·증설 전(前)						
	또는 신·증설 후(後)) - -)) +)				
	분양 등 계약		건축허가일 (기기) 의			투자완료	
Α)	체결(예정)일	2	-공(예정)일			(예정)일	
입	종(한국표준산업				생산품		
ネ F・	분류번호)						
	자금액(부지+설비)		-2.42	신청시	상시고용인	원	명
- 무지	기 분양(매입)금액		천원	시	규고용인원		명 명
	설비투자금액		천원		,,모 5 년년 - 상시고용인	0]	
	(A+B+C+D)		신전	ナヘデー 	- 경기고등인	전	명
	건축비(A)		천원		장비구입비(B	/	천원
 7]!	반시설설치비(C)		천원	근로	환경개선시설]	천원
	. ,				설치비(D)		
	보조금 총액			천원	지워	비율 특례	해당사항
	즈금 신청액(국비)			천원	7.6	16 11	, 0 1 0
	분담금(광역+기초)			천원			
l	업의 투자계획	□ 보증보험증	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확보방안(제14조제5항)					•	
'ぜ	산시 투자유치촉진조	:례」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	규직 저	[9조의3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증설기	업에 대한 투자보조	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	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신·증설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 2. 사업자 등록증 1부
-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4. 산업·농공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7. 공장등록증명원(부분가동 공장등록증 포함) 1부
-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제15조제2항 및 <u>제18조의8</u> 의 규	제18조의4
정에 의한 보조금의 1인당지원	
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	
을 감안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
	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u>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u>
	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
	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
	<u>우를 말한다.</u>
제9조의3(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제9조의3(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조례 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	
는 각종 보조금은 지식경제부장	산업통상자원부장
<u>관이 정</u>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	관이 고시
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u>설></u>

-----.

제9조의4(신·증설 기업 지원) 조 례 제19조의3 규정에의해 투자 시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 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군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전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위 규칙의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법률제11048호 2011.9.15 전부개정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24102호 2012.9.14 전부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으로 변경하여 관련법을 정비함(안 제1조)
- O 종전의 감경기준 별표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2조)
- 종전의 감경대상기준에서 법 위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 위반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을 1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와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로 명확히 적용하고자 함(안 제3조)
- O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에 대하여 적용함 (안 제4조)
- O 별지 서식 적용 (별지 1호 ~ 별지 4호)

3. 참고사항

- O 관계법령
 -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군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u>홍</u> 첫 <mark>문학인</mark> 함위한

2014년 8월 11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67호

군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다.

- 제2조(감경기준)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법 "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 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로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 반한 경우
- 5. 청소년선도 · 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 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기준 비교표

감 경 대 상		경률 %) 후	증빙자료 및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급자증명서 등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 50	50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1급~3·4급~6·4급~6·		50 신설30	장애인등록증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	가 25	50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위반 행위를 한 자		50	피해사실 확인서 등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50	법원증명서 등
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에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기소50 선고25	50	법원서류 등
8.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해 위반한 자		50	경찰서 확인서 등
9.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자		신설50	경찰서 확인서 등
10. 희귀·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0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기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30	신분증
12. 만65세 이상 고령자	50	30	신분증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신설30	과징금처분대장확인 등
14. 청소년보호육성등의 공로로 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5년이내)	자 25		
1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럽	÷ 25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감 경 대 상	감경률 (%)	증빙자료 및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급자증명서 등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0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3.「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1급~3급 4급~6급	50 30	장애인등록증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 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50	피해사실 확인서 등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법원증명서 등
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법원서류 등
8.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해 위반한 자		경찰서 확인서 등
9.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자		경찰서 확인서 등
10. 희귀·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0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30	신분증
12.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신분증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30	과징금처분대장확인 등
1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50	독립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소	년 보호법 위반자	- 과징금	감경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	주 소							
청 인	업 소 명 (소재지)			전화 번호				
	위반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		처분내용					
감	경 사 유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

2.

【별지 제2호 서식】

	청	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 적	주 소	
사	업 종	업 소 명
ঠি	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	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	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	
재빌	방지방안	

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군 산 시 장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소	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7	감경결정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_
신	주	소				
청 인		소 명 재지)				
	위반	일자			위반내용	
7l. 7l	감경	사유				
감경 처분	감경	내용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 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		인 적	사	항	실크림	적발	감경	감 경	감경액	n) =
22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적발 일시	적발 감경 일시 대상		감경액 (비율)	비고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청소년 보호법」(법률제11048호 2011.9.15)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O 법제처 주관"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 O "「청소년보호법」제44조"를"「청소년 보호법」제49조로 변경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 O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 서"를"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으로 하여 알기 쉽 고 간략하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 O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하여 현금지급에서 상품권지급으로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 자함(안 제7조제2항)
 - ⇒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O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 기타 ⇒ 그 밖에
 - 규정에 의한 ⇒ 따라, 따른
 - 자 ⇒사람
 - 신고일로부터 ⇒ 신고 날로부터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 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u>홍</u> 첫 <mark>전</mark>테인 함위한

2014년 8월 11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68호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보호 법」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라"로, "별표 1의 규정"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 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른 법령 등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일로부터"를 "신고 날부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목적) 「청소년 보호법」
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	제49조에 따라
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	
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제3조(신고대상)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	
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	별표 1
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	그 밖
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	의,
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각 호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	4. 그 밖의
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	
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시

보

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 급된 경우
- 2. (생략)
-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로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4. (생략)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 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람.	
로	
·.	
②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 (현행과 같음)	
3 신고 날부터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	
지급하되, 지급액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 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 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 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 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